

평창군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 
군의회 의견 청취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평 창 군 의 회

평창군 군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군의회 의견 청취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부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9. 05.27 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9. 06. 29(월)

다. 상정일자 : 2009.06.29(월) 제163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 
제6차 본회의

### 2. 제안이유

가. 공원구역내에 위치한 다중 이용시설인 봉평면公所(성당)와 주택 등 기존 건축물 입지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,

나. 공원구역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일부 변경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가. 국 계획시설(창동공원) 면적 축소

(단위 : m<sup>2</sup>)

기 정	변 경	증감	비 고
187,040	178,049	(감)8,991	

## 4. 검토결과

○ 본 의회의견 청취안은,

봉평면 창동근린공원 내의 진부성당 봉평공소 등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고 이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,

○ 위 청취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

-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의 경우 건축제한등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토지매입 및 사업시행을 조속히 완료하여 하여야 하나, 예산부족에 따라 20~3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또한 일반시설물이 소재하고 있거나 장래에 공원으로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불요불급한 지역은 해제를 검토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,
- 제척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으로 형평성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